



국가인권위원회공보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10월 15일

제17권 제5호

알 립

-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공 지 사 항

1	인사발령 등	766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768
3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및 처리 현황	772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774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1 2019. 8. 22.자 결정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 78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

- 【1】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기 바람.
-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 가.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 나. 관계법령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권리의 절차보장
 - 다.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 라.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마.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정비
 - 바. 거주시설 변환 및 전문인력 훈련 계획
 - 사.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의 원칙과 지침
 - 아.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 자.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차.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공표 및 사회적 인식과 이해증진 방안
 - 카. 미성년 장애인 및 다른 유형의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추진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1 2019. 3. 18.자 결정 18진정0910000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의료조치 미흡 등】

..... 805

- 【1】 경찰청장에게,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의 필요성을 반드시 고려하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할 것과 체포된 사람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
-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 5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019. 3. 18.자 결정 18진정0746200 【부당한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 830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3** 2019. 4. 9.자 결정 18진정0785700 **【피의자에 대한 단독조사 등 인권침해】** …… 839
 ○○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참여수사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4** 2019. 4. 30.자 결정 18진정0917000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 848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5** 2019. 4. 30.자 결정 18진정0547200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 862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경찰청장에게, 전자충격기 사용과 관련한 ‘현장매뉴얼’에 대상자의 저항수준에 맞는 각 단계별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충격기 사용 전에 대상자에게 경고나 대화, 설득 등 언어적 통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

차별행위 조사결정

- 1** 2019. 7. 24.자 결정 18진정0107300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 872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을 남성 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하여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와 직위는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등 여성을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한 (주)○○○○에 대하여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2** 2019. 8. 7.자 결정 19진정0448800 **【장애인거주시설 강제퇴소 및 전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 889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가. 「생활인 권리 및 입퇴소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인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한 퇴소 또는 전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

나. 퇴소 또는 전원 시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원 예정 시설에 대한 정보 및 사전(예비)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랍.

다. 거주인의 지적 능력 등을 이유로 부득이 타인이 퇴소 결정을 대행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순서 및 절차를 준수하기 바랍.

[2] 경기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주인이 퇴소하는 경우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및 전원 과정에서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3 2019. 8. 7.자 결정 19진정0014101, 19진정0111701 병합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914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2019. 8. 7.자 결정 19진정0158800 **【정신병원 강박 등 인권침해】** 923

정신병원 내 보호사가 진정인을 겁박한 것에 대해 피진정병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1 신착 단행본 933